

# 한의학대학 보직자 업무지침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정관 제90조의2 및 직제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의과대학의 보직자는 한의과대학장, 한의과대학 부학장, 한의예과장, 한의학과장, 한의임상학과장, 교육실장, 간호학과장, 간호임상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무와 권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학사운영을 총괄, 대학발전 기금 모금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각종 회의 소집 요청할 수 있다.
3. 전체교수회의, 임상교수회의, 기초교수회의 결의사항을 재논의 요청할 수 있다.
4. 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 교육실장, 한의임상학과장, 대학원학과장, 간호학과장, 간호임상학과장 및 각 학년 지도교수를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5. 한의과대학 발전 기금을 전체교수회의의 동의를 받아 집행 할 수 있다.
6. 한의과대학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감독할 수 있다.
7. 교육프로그램, 교육자원의 배분, 교육전용예산의 집행과 운영, 예결산 집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지휘, 감독한다.
7. 보건의료분야 등 관련분야와 협력한다.
8. 기타 한의과대학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지휘, 감독한다.

② 부학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학장을 보좌하며 한의과대학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 학장 부재시, 학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한의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한의학과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한의학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4. 각종 회의 소집을 학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5. 한의예과장, 교육실장, 한의임상학과장, 한의학과 학생회와 협력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6. 기타 학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한의예과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한의예과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한의예과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회의 소집을 학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4. 한의학과장, 교육실장, 한의임상학과장, 한의예과 학생회와 협력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5. 기타 학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한의임상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임상교육에 관련된 학생의 학사운영과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임상교육에 관련된 학생의 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의학과장을 보조하면서 관장한다.
  3. 한의예과장, 한의학과장, 교육실장과 협력하여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기타 임상교육에 관련된 학장의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 ⑥ 교육실장은 한의예, 한의학과와 교과과정 개편, 교육관련 위원회 활동, 교육프로그램 실시, 교육관련 평가 등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⑦ 간호학과장, 간호임상학과장의 의무와 권리는 간호학과학사운영내규에 따른다.

**제4조(보직자회의)** 한의과대학 발전과 학사업무 공유를 위하여 보직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인 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한의임상학과장과 교육실장은 학장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만 보직자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무)** 보직자회의 사무는 한의과대학 행정실에서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시행)**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